

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

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철거·처리하고,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함

※ 관련근거 :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5조 및 제26조, 「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」

I 사업개요

- 접수기간 : 2022. 1. 10.(월) ~ 2. 11.(금)
 - * 신청기간 종료 후 잔여사업비 발생의 경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사업진행
- 접 수 처 :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
- 신 청 자 : 건축물 소유자,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
- 총사업비 : 1,997백만원
 -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: 1,865백만원(국932, 도280, 군653)
 -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: 132백만원(국66, 도20, 군46)
- 사 업 량 : 약 547동
 -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: 약 517동(주택 493동, 비주택 24동)
 -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: 약 30동

II 지원기준

-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
 - 지원대상 : 주택 및 부속사의 지붕,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
 - 지원금액 : 주택 및 비주택 모두 최대 344만원(초과분 본인부담)

- 우선순위 : 타 부처 연계사업¹⁾ 우선집행, 일반가구는 사회취약계층을 우선하고 슬레이트 설치년도 고려한 노후정도 순으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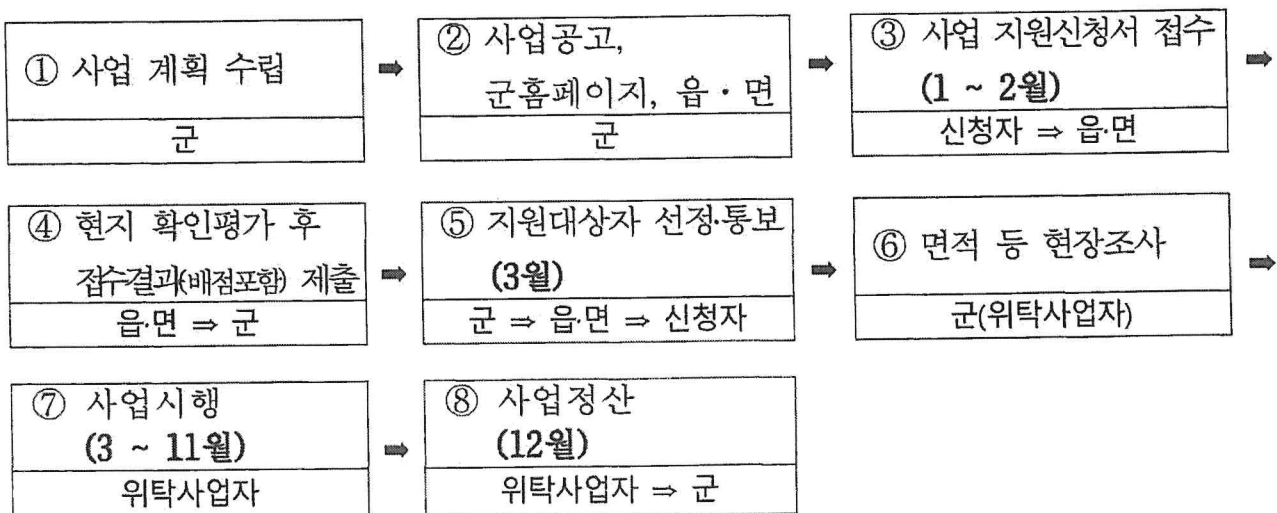
○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

- 지원대상 :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한 주택만 지원가능
- 지원금액 : 최대 610만원(초과분 본인부담)
- 우선순위²⁾ : 기초생활수급자 > 차상위계층 > 장애인 포함 가구 · 한부모가구 · 독거노인가구

○ 지원제외

- 공통사항
 -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
 - 지방세, 환경개선부담금, 세외수입 등 체납자
 - 개인이 임의 철거·보관·처리 및 지붕개량 후 비용청구 불가
- 지붕개량 지원사업 경우
 - 주택 노후로 지붕개량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
 - 건축신고 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건축물³⁾은 제외

III 추진절차



1) 자가가구 주거급여,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, 농어촌주택 개량·개보수 사업, 빈집정비사업 등

2)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> ②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> ③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구, 독거노인가구

3) 건축물 지붕면적의 증가 또는 높이가 높아져 증축에 해당하거나, 대수선(기둥, 보, 지붕틀 각 3개이상 수선 등) 등을 하는 것

- 슬레이트 철거 및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: 위탁사업자 ((사)한국석면안전협회)

IV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 1부
-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
- 지원동의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(건축물 대장, 토지대장 등) 1부

V 기타사항

- 「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」 변경될 경우, 지원금액 등 사업내용 변경될 수 있음
-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- 슬레이트지붕인 빈집정비사업 신청건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·면(산업팀)에서 일괄접수 후 농촌활력과 수합, 환경관리과로 통보됨
-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(☎054-650-6181)로 문의바람.

- 붙임 1. 배점기준표 1부.
2. 제출서류 1부. 끝.

붙임 1

배점기준표

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

점수표 선정기준	10	8	6	4
우선순위	사회취약계층 우선, 그 외 일반가구 지원			
슬레이트 설치년도	1980년 이전	1990년 이전	2000년 이전	2000년 이후
슬레이트 노후정도	노후 되어 슬레이트 비산 및 파손	노후 되어 비산의 가능성 있음	노후 되었으나 비산의 가능성 없음	보전상태 양호

* 사회취약계층 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> 차상위계층 > 장애인 포함 가구 .
한부모가구 . 독거노인가구 순임

☐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

점수표 선정기준	10	7	4
우선순위	기초생활수급자	차상위계층	장애인 포함 가구, 한부모가구, 독거노인가구